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 가중처벌〉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76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8. 8.
3. 회 부 일: 2025. 8. 11.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자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Ⅲ. 주요내용

- 가.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조의14 제1항)
- 나.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의14 제2항)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i) 항행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하여 ii)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iii)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의14).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14(항행 중인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9호1)에 따른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형법」 2)상 폭행

1)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항행 중”이란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碇泊)

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얹혀 있는 상태

2) 「형법」

죄나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가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³⁾)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운항자를 폭행·협박하는 것은 개인인 운항자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므로, 개정안은 운항자, 여객 등 해상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상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것임.⁴⁾

또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는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⁵⁾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⁶⁾ 해상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선박 운항자 폭행·협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관련 범죄와 개정안 비교>

구분	「형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 폭행·협박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제260조①)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제260조③)		
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제283조①)		
	반의사불벌죄 (제283조③)		

4) 판례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 13345 판결)

5)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특가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문언상 형법 제260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을 인용하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가 교통질서의 확립과 교통관여자 등 시민의 안전 도모에 있기 때문이다”(이주원, 특별형법 제6판, 홍문사, p. 256)

폭행치상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262조)	3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62조)	무기, 5년 이상 징역	무기, 5년 이상 징역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유사 법률과의 관계에서 입법필요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 외에도 해상교통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목적으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⁷⁾에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⁸⁾상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박의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7)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폭행·협박·상해·살인죄) 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8) 「선원법」

제165조(벌칙) ① 해원이 직무수행 중 상사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구성요건 중 “항행 중”인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개정안의 가중처벌 이유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인 특정범죄가중법 상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의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운행 중’에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상 ‘운전’ 및 ‘운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즉 ‘주행 중인 경우’ 외에도 공공의 안전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실제로 주행 중이 아닌 ‘신호대기, 승객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지’도 포함되나,⁹⁾ 반면에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는 해당하지 않음.¹⁰⁾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행 중”인 선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같은 법에서는 “항행 중”을 선박이 정박(碇泊),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얹혀 있는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정의인 점에서, 이를 그대로 운항자, 여객 등 해상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상교통질서와

9) 이주원, 앞의 책, p. 254

1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예컨대, 정박하거나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경우에도,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¹¹⁾ 등과 같이 정박 등의 행위가 공중의 해상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항행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구성요건 중 “운항자”의 범위에 대하여 개정안의 가중처벌 이유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인 특정범죄가중법 상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의 경우 폭행·협박의 대상인 “운전자”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작동방식 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특정될 수 있는 반면, 선박은 그 구조 및 작동방식의 특성상 “운항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참고로, 「해상교통안전법」은 ‘운항자’를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반면,¹²⁾ 「상법」,¹³⁾ 「해사

11)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좁은 수로 등) ⑦ 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안전기본법」¹⁴⁾ 등에서는 ‘운항자’를 선박의 소유주 등에 대응하여 ‘선박을 그 명의로 책임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입법례도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인정되나,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선박에서의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입법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경우와 달리 “항행 중”의 범위 및 “운항자”의 의미가 가중처벌 구성요건으로서 불명확한 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56

1. ~ 3. (생략)

- 13) 「상법」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 14)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 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4. (생략)